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9. 26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보건행정과장)
- 제출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상정 및 의결: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4. 9. 26.)

2. 개정이유
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 사항에 의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 명시

3. 주요내용

-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금액(3,000원) 명시[별표2]
- 인용 법률명 정비(안 제4조제2항제4호, 제5호 및 제8호)

4. 관계법령

- 「지역보건법」 제25조
-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법률의 제명을 반영하고, 제명의 오기를 정정하며,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하는 것으로
-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2023년 11월 22일 일괄개정된 총리령 제1916호 「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」에 따르면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
- 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지 2 수수료 변경 사항은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5조의 시행일 이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시행일과 관련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안 ·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u>다만,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u>